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우정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우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직급을 조정하는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우정9급 정원 14명을 감축하고, 368명을 우정7급 정원 134명과 우정8급 정원 234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771명(5급 44명, 6급 234명, 우정5급 10명, 우정6급 110명, 우정7급 373명) 중 82명(우정7급 82명)을 종전의 직급(우정9급 82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00. ~ 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33,157”을 “33,143”으로 하고, 우정주사보 “4,150”을 “4,284”로 하며, 우정서기 “6,416”을 “6,650”으로 하고, 우정서기보 “9,916”을 “9,53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3,042”를 각각 “33,028”로 하고, 우정주사보 “4,523”을 “4,575”로 하며, 우정서기 “6,993”을 “7,227”로 하고, 우정서기보 “8,620”을 “8,320”으로 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별표 3의 정원 689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간호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4명, 행정주사·공업주사·식품위생주사·간호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34명, 우정주사(우정5급) 10명, 우정주사(우정6급) 110명, 우정주사보 29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정원 689명(행정서기·공업서기·식품위생서기·간호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78명, 우정서기보 4

11명)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일반직 계	<u>33,157</u>	<u>33,143</u>	-14
.	.	.	
.	.	.	
우정주사보	<u>4,150</u>	<u>4,284</u>	+134
우정서기	<u>6,416</u>	<u>6,650</u>	+234
우정서기보	<u>9,916</u>	<u>9,534</u>	-382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3,042</u>	<u>33,028</u>	-14
일반직 계	<u>33,042</u>	<u>33,028</u>	-14
.	.	.	
.	.	.	
우정주사보	<u>4,523</u>	<u>4,575</u>	+52
우정서기	<u>6,993</u>	<u>7,227</u>	+234
우정서기보	<u>8,620</u>	<u>8,320</u>	-300
.	.	.	
.	.	.	